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 및 시급성

1. 상고제도 개선 절박

▣ **상고심 현황 ⇨ 사건 폭증으로 물리적 한계 봉착**

▶**10여년 사이 상고사건 2배 증가**: 18,600건(2002년) VS 37,651건(2014년)
- **2015년 40,000건 돌파** 예상

▶2014년 기준, **대법관 1인당 연간 3,178건, 하루 평균 8건 처리**

- 정당한 권리자 보호 지연 ⇨ **국민들의 피해**로 귀결
- 선진 국가 최고법원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사건부담 ⇨ **국가적 위상을 떨어뜨리는 문제**

▣ **상고사건 처리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 막대**

▶상고심 **소송물 가액** 합계 **5조원** ⇨ **사건 처리 1년 늦어질 경우**, 자본시장 평균 이익률 2%에 해당하는 **1천억 원 경제손실** 발생

▶상고심 **당사자 12만 명**(논산시 전체 인구수)의 **물질적, 정신적 고통** ⇨ 신속한 **일상 복귀 필요**

▣ **현재의 무제한적 상고 허용 정책은 일제 식민지 잔재로서 청산 필요**

2. 바람직한 상고심 개선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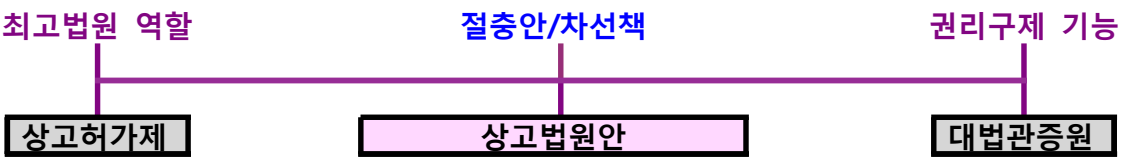

▣ **대법관 증원론의 위험성 및 허구**

- **①진보 인사의 최고법원 진출**
  - **민변 등 진보 세력** 배후에서 **대법관 증원론 강력 지지** ⇨ **상고법원 도입 좌초**되면, **대법원 증원론 대안**으로 내세우며 **최고법원 입성 시도**할 것
- **②미봉책**
  - 수 명의 **대법관 증원해도, 상고사건 적체 문제 해소 못함**

▣ **상고허가제 ⇨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 그러나 ①국민 정서와 괴리, ②이미 실패한 경험**

▣ **상고법원안 ⇨ 최선은 아니지만, 우리 현실에 적합한 차선의 개선 방안**

상고법원 판사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1. 상고법원 판사 임명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 **대법관추천위원회에 준하는 상고법원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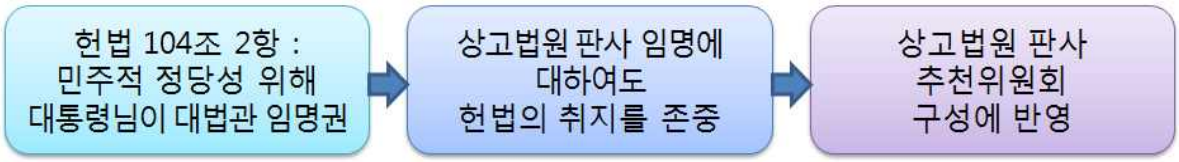

▣ **상고법원 판사 임명에 대통령님 意中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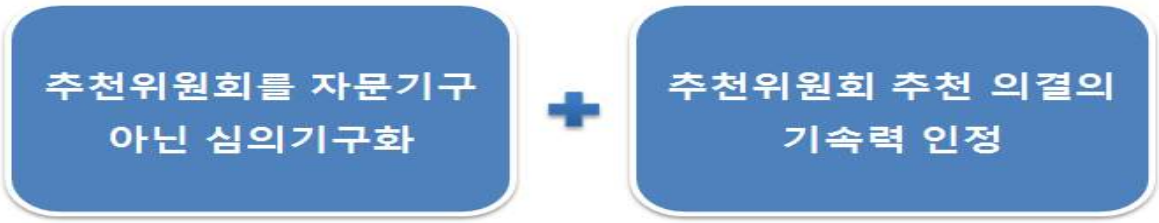

2. 상고법원의 역할과 위상

▣ **상고법원의 실질적 역할 ⇨ 폭행, 대여금, 임대차보증금 등 개인적 분쟁 처리**

- 국가적·사회적 관심 사건은 여전히 대법원에서 처리
  - ①필수적 대법원 심판 사건 범위 대폭 확대, ②사건분류 단계에서 정부 의견 최대한 존중
- 상고법원의 일탈성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통제 가능

▣ **상고법원은 최종심 법원이지만, 최고법원은 아님**

- 상고법원 판사는 사실상 대법원이 처리할 가치 없는 간단한 사건의 3번째 심급 담당 법관에 불과, 실질적인 최고법원의 법관 아님

⇨ [대법관에 대한 국회 동의와 대통령님 임명]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고법원 판사에 대한 임명절차 마련할 필요성 낮음

상고법원 법률안 의원입법 발의 경위

1. 시기적 불가피성 및 절대적 시간 부족

▣ **대법원 2014년 하반기부터 법률안 준비 ⇨ 19대 국회 임기 만료(2016. 4.)까지 1년 6개월의 시간만 남아 있던 상황**

▣ **정부입법 과정에서 법무부의 처리 지연 또는 기피 현상 존재**

- 대법원이 **법률안을 법무부에 송부한 후** 국회에 발의되기까지 **수년 소요**된 사례 상당수 존재
- 대법원이 송부한 **법률안 핵심 내용을 변경** 시도한 사례도 존재(예: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 **사무관장기관**을 **법무부**로 **변경 시도**)

법률명	대법원이 법무부에 법률안 송부한 시점	정부가 의회에 법률안 발의한 시점	소요기간
행정소송법	2013. 3. 법무부 대법원 합의 도출	법률안 미제출	법률안 미제출
강제집행등과 체납처분 절차조정법	2008. 11.	법률안 미제출	법률안 미제출
상업등기법	2002. 1.	2006. 3.	4년 2개월
비송사건절차법	2002. 1.	2006. 3.	4년 2개월
사법보좌관법	1999. 2.	2004. 9.	5년 7개월

2. 과거 선례 및 타 기관 관행 고려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이 자체 조직이나 기능 관련 법률안 발의하는 경우, 정부입법 아닌 의원입법 형식 취함**

- [국회] 국회법이나 국회사무처법 개정안 ⇨ 소관 **상임위 위원장 제출**이나 **의원 발의** 형식, 정부 입법은 찾아보기 어려움
- [법원] 특허법원, 행정법원 설치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 ⇨ **의원 발의**
- [헌법재판소] 헌재 설립된 1998년 이후 발의된 **헌법재판소법 개정법률안 59개 中, 정부 제출 단 2회**, 나머지는 **법사위원장 제출**이나 **의원 발의** 형식

▶**위헌 형벌법규의 소급효**를 헌법재판소의 종전 합헌결정 이후 시점으로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법률안** ⇨ 2013. 4. 10. **의원 발의**

▶**헌법재판관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법률안** ⇨ 2013. 2. 19. **의원 발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사법한류 추진

1. 추진 필요성 ⇨ 경제도약 및 국가경쟁력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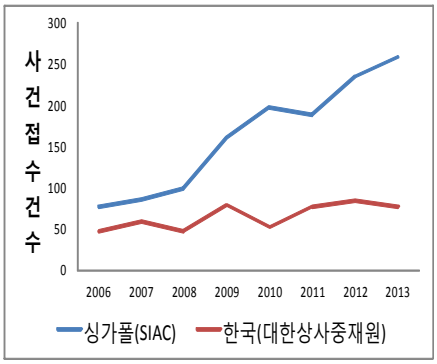

1 **세계경제의 중심 아시아로 이동** 중 ⇨ 아시아 지역 국제분쟁 및 법률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국가 新성장 모델로 설계**

▸싱가폴 국제중재센터 최근 8년간 2배이상 사건 증가

▸**중재 사건 1건** 유치시 **25억 원** 경제가치

▸법률서비스 분야에서 막대한 **富의 유출**[국내 법률시장 **3조원** VS 국내기업 해외 지급 법률비용 **10조원**]

2 **국제사법신뢰도 향상 ⇨ 국가경제발전과 직결**

▸ **법치주의와 GDP는 비례**관계(이코노미스트誌)

▸ 세계은행 발간 기업환경보고서**[분쟁 해결 부문] ⇨ 대한민국 사법부 3년 연속 2위**

▸ **선진 국제사법시스템 구축** ⇨ ①**국가 신인도 상승**과 **Country Risk 하락**, ②**외국인 투자 유치**와 **우리 기업**의 유리한 **해외진출 기반 조성**

2. 추진 기본 방향 : 인바운드·아웃바운드 양방향 전략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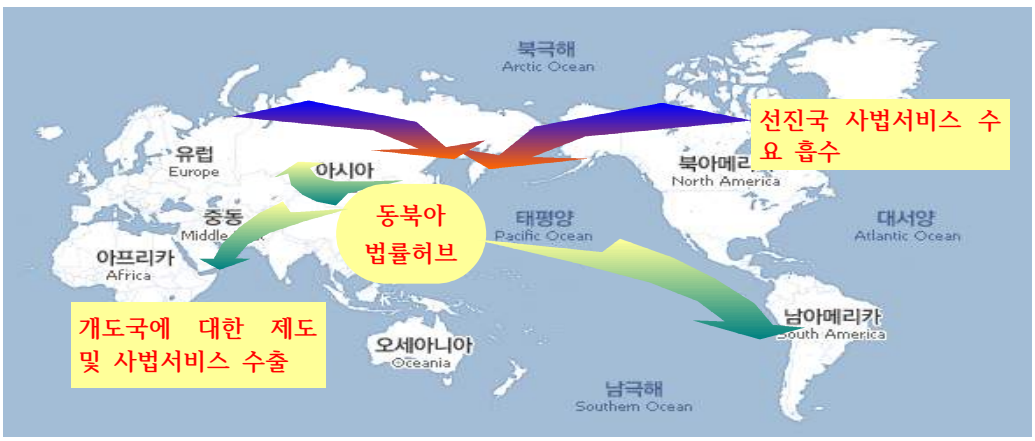

1 **인바운드 [외국 ➡ 한국]** : **IP허브코트**, **국제상사법원** 및 **국제중재기구 설치** ⇨ **국제분쟁해결지**로서 **위치 선점**

2 **아웃바운드 [한국 ➡ 외국]** : 개도국에 **대한민국의 법제도 수출** ⇨ 법치주의 확산에 기여하는 **선진 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 이미지 제고**

☞ **[장기적 목표] 동북아 법률수도**로서 동북아 법률시장에서 맹주 지위 획득

3. 추진 방안

1 IP 허브코트 프로젝트

❖ **IP와 사법서비스 결합으로 新성장 동력 마련**

▸ 세계은행 평가 **세계 2위**의 **사법서비스**와 **세계 4위 특허 출원 수**의 각 **장점을 융합**

▸ 아시아권의 **치열한 IP 허브국가 유치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한 **필수적이고 시급한** 국가적 과제

❖ **물적·인적·제도적·국제적 기반형성 필요**

▸ **국제재판부를 통한 신속·정확·저비용의 판결로 글로벌 IP 분쟁에서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하는 등 특허법원의 전문성 및 국제적 위상 강화**

▸ 산업계까지 망라하는 **IP허브코트 추진위원회 구성** ⇨ 전문성 강화 방안 등 논의

▸ **국제 특허법원 컨퍼런스** 개최

❖ **아시아 IP분쟁해결 중심국 지위확보**

▸ **글로벌 IP 분쟁해결**에 관하여 **아시아**의 **중심 법원**이자 **중심 국가 지위 획득**

▸ 현재 **IP 창출 강국 대한민국** ⇨ **IP 보호 분야 강화로 IP 창출·활용·보호의 삼위일체** ⇨ **진정한 기술강국 기반 마련**

2 국제상사법원 및 국제중재기구 신설

❖ **국제자유경제구역 내 국제상사법원 신설**

▸**인천 송도, 제주도** ⇨ **국제자유경제구역 지정, 법률시장 완전 개방** [세금 면제, 규제 완화]

▸국제자유경제구역 내 **국제화·특화된 경제 전문법원 설립, 외국 재판관** 법관 임명

► **국제상사부, 파산부, 중재전담부, 해사부 등 국제사건 전문 재판부** 운영

► 재판절차에서 **영어 사용, 외국 변호사 소송대리 허용**

❖ **국제자유경제구역 내 국제중재기구 신설**

► **정부 주도의 법원연계형 국제중재센터** 설립

► 국제중재센터와 **중재전담재판부 연계, 집행까지 신속**·공정한 **원스탑 사법서비스** 제공

► 전문성 갖춘 **유능한 중재인 확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중재시설 구비**

► 향후 3년 이내에 **아태 지역 국제중재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 구축**

3 사법제도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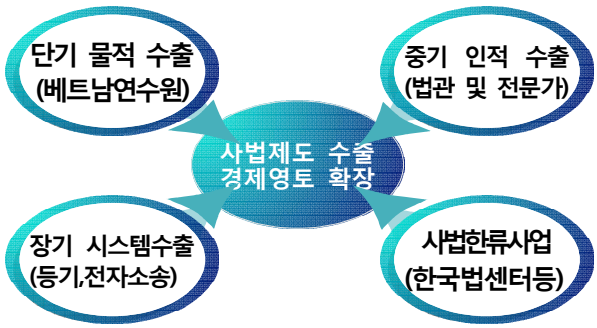

❖ **개도국에 사법제도 및 시스템 이식**

► **BH 주도** 아래 사법부, 법무부, 법제처, 외교부(코이카) 등 **유관기관 참여하여 공동사업 추진** ⇨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도모

► 사법시스템과 제도 수출 통한 **법률영토 확장**

► 국내 기업 해외진출의 기반 조성 ⇨ 법의 지배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

► **전자소송, 부동산등기제도, 가족관계등록제도, 출입국관리시스템 등**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법제도와 시스템 전수**

4. 구체적 정책 실행 방안

▣ **BH가 컨트롤타워로서 ① 유관기관 참여하는 공동 추진체 구성, ② 사법한류 정책 표방 및 추진 ⇨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의 강력한 추진 동력으로 활용**

●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하는 **全국가적 혁신 아젠다**로 설정

● 구체적 사업 추진을 위한 **장단기 액션 플랜 수립**

▣ **사법한류 사업 착수**

● 새로운 사법인프라 구축의 **제도적 장애요인 등 제거**

● 사법한류에 대한 국내외 **다각도의 홍보 실시**

● 액션 플랜에 따른 **단계적 실행 계획 실천**

∴ ① 과감한 세재혜택, 규제완화를 표방하는 **국제자유경제구역 지정, ② 국제기준 법률 제정,** ③각종 **전문사건의 관할 집중 및 전문적 사건 처리** 등

노동 개혁을 위한 노동분쟁해결 프로세스 혁신

1. 혁신 필요성

1 노동 시장의 구조적 모순, 노사갈등의 폐해 심각
⇨ 경제도약의 발목 잡는 주된 원인

- 우리나라 **사회갈등**, **OECD 27개국 중 2번째**로 심각
-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 진입 위한 마지막 **장애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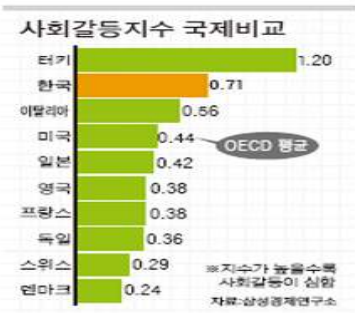

2 일자리 창출 정책 + 효율적 노동분쟁시스템 설계 ⇨ 노동 시장 전체의 인프라 강화

- 임금 피크제 등 **新제도** 도입 ⇨ **未知의 분쟁 이슈화** 가능성 高
- **자주적·평화적 분쟁처리시스템** 구축 ⇨ ①**新제도**의 **안착**, ②**노동개혁 완성 견인**하는 **선순환구조 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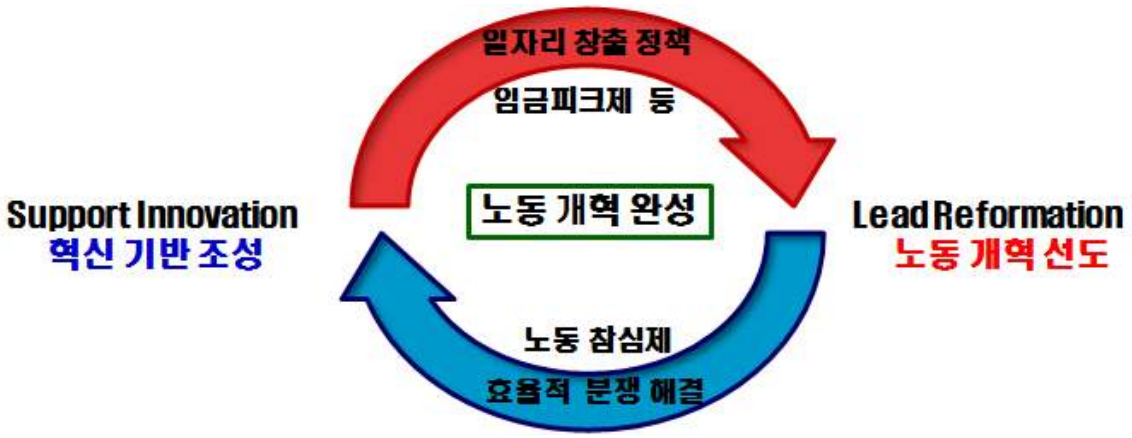

2. 혁신 방안 ⇨ 노동분쟁 전문가참여제(참심제) 도입

▣ 현 노동분쟁해결 구조의 한계 극복

- 세계에서 유일하게 노동위원회가 개별적 노사분쟁까지 처리
- ①사실상 5심제(지노위+중노위+3심 소송)로 운영, ②위원회의 중립성·독립성 낮고, 충실한 심리도 안됨

▣ 일본의 노동참심제 성공 사례 벤치마킹

시행 경과	2004년 **내각 주도**로 제도 도입 ⇨ **2006. 4.부터 시행**	개혁 배경	1990년대 초반 **버블붕괴로 노동분쟁 급증** ⇨ 신속성·전문성 갖춘 노동분쟁해결시스템 구축
성과	2006. 4.~2009. 9. **동경지재 노동심판사건 중 78% 참심제로 종국 (조정성립율 71.8%)**	평가	기존 노사분쟁해결시스템에 대한 **획기적 변혁**, **일본 사법개혁 중 가장 성공한 사례**로 평가됨

▣ 한국식 노동분쟁 전문가참여제(참심제) 도입

구분	내용
노동사건 처리주체	(가칭) **노동심판위원회** ▸ **직업법관 1명, 노동심판원 2명(사용자측 1명+노동자측 1명)**으로 구성 ▸ [위원회 성격] **법원연계형 독립적 분쟁처리위원회** (입법정책 사항)
담당 사건	**해고, 임금 등** 개별적 근로관계 사건
신속한 분쟁해결	**1회 기일 조기 지정** + 원칙적으로 **3회 기일 이내 종국** 처리
사건처리 프로세스	①일단 **조정** 시도 ⇨ ②실패 시 **심판** ⇨ ③불복 시 **소송**으로 이행
사건 처리 방법	법리 판단에 구속되고 않고, **분쟁 실상에 적합한 결론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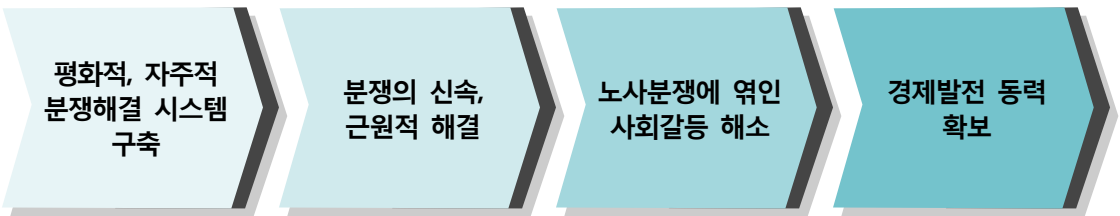
▣ 혁신의 기대효과